#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이용선·서영석·전재수

김성환 · 이해식 · 윤건영

위성락 · 정태호 · 김주영

백승아 • 박주민 • 김용민

김 현 • 윤종군 • 민형배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행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공항운영자가 취업지원 등을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4 신설).

아울러, 현재 23시에서 06시에 해당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경우에는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추가 부담금을 시간대에 따라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항공기의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

#### 법률 제 호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 2.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 사업

제17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을 "저녁 및 야간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2배를"을 "2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로 한다.

법률 제20389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취업 지원)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	7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	제8조제1
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
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	호 및 제8호
호의 사업을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 사업
2. ~ 7.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1호 및 제2호</u> 의 설치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 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 · 교육 · 의료 · 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 ③ ~ ⑤ (생 략)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 ⑥ (생 략)

법률 제20389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u> 설>

<u>.</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저녁 및 야
간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시간</u>
2배의 범
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금액을</u>
③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389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4(취업 지원) 시설관리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
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취업

## 지원을 한다.